

의원발의 조례안 예고

아래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4월 13일

양 산 시 의 회 의 장

1. 자치법규명

연 번	안 건 명	발의자
1	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박일배 의원 대표발의
2	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박일배 의원 대표발의
3	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폐지규칙안	박일배 의원 대표발의
4	양산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	곽종포 의원
5	양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	최순희 의원
6	양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	강태영 의원

2. 개정이유 : 붙임 참고 바람

3. 주요내용 : 붙임 참고 바람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의회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우편번호 : 50624

※ 주소 : 양산시 중앙로 39 (의회사무국)

※ 전화 : 392-8622, 팩스 : 392-861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 치 법 규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